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정책 모색
: 한일 소비자 위해정보 분석을 중심으로

이 현 진(성신여대 전임강사)

Ⅰ. 서 론

소비자안전에 관한 문제는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안전 피해는 그 내용과 유형이 광범위하여 위조표시나 첨가물로 인한 식품안전문제를 비롯하여,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등에 있어서의 안전성 결핍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사망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보다 편리지향적인 소비구조가 정착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식품 및 공산품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소비자정책, 특히 소비자안전정책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김현주, 2006).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권이며, 안전의 욕구는 모든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이다. 소비시장에 있어서의 소비자안전 확보는 소비자와 기업, 정부 모두가 인식해야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부재로, 사전에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규제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비롯하여 소비자위해정보 관리 등 정부의 소비자 안전시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안전업무는 업종별로 관련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여러 정부 기관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업종 분야별 관계 부처가 상이하고 위해정보의 수집과 관리, 제품 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 리콜제도의 운영 등에 있어 여러 기관에 걸쳐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안전시책의 일관성 부족과 효율성 저하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소비자안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비자위해정보 분석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소비자안전정책의 발전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인접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시장 환경 및 소비문화가 유사하고, 소비자정책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일본의 소비자안전정책 및 소비자위해정보 현황을 살펴보고 함께 비교 연구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의 소비자안전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소비자안전정책의 필요성

1. 소비자안전 확보와 정부정책의 필요성

생명과 건강의 유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안전한 소비생활은 소비자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인간이 생존해가는 사회에서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된다. 그러므로 위해를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업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사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인식하고 규칙을 지킨다면 소비자생활에 있어 안전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위해를 발생시키는 상품 및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소비자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생활에 있어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소비자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소비자가 위해를 입는 원인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함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방법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상품의 내용과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또한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있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개입의 주된 이유는 시장실패이다. 담합 등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가운데 기업은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게을리 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입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은 사업자의 책임이나, 이러한 이유로 시장 기구에만 의존한다면 위해발생의 미연방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시책이 필요시 된다.

소비자안전 확보와 위해의 미연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구매가능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또한 소비자의 오사용 방지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고 알기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정부 시책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안전기준 및 안전규격을 책정하고,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전기준의 적합성을 검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발생을 회피할 수 있기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표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소비자안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방법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으로는 크게 첫째, 제품의 안전기준을 통한 법적규제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광고규제 등을 통한 직접적 규제가 있으며 둘째, 표시규제, 등급사정, 제품표준화 등 제품안전을 위한 정보공개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정보비용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간접적 규제정책이 있다. 또한 셋째로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소비자단체를 육성하는 등의 소비자 지원정책이 있다.

(1) 직접적 정부규제

소비자안전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로 업종별로 일정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자 허가, 안전규격 승인, 제품의 사전·사후 안전검사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안전을 강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식품위생법, 약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과 같은 법률을 통해 각종 안전과 관련한 표시규제제도의 운영, 부당광고나 기만적 광고 금지, 부당계약의 무효화 등에 대한 정부의 법적 개입이 소비자안전을 확보하는 직접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이밖에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비자관련법 제도이다. 이러한 법률을 통한 직접적 규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법적 규제정책만이 소비자안전을 확보하는데 완전하다고 하기 어렵고 정부의 법적 규제정책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 소비자 스스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안전 교육이나 홍보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메스미디어 등을 통한 식품 및 의약품 등의 과장 허위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부당광고에 대한 광고규제 또한 중요하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과 기술제품의 증가, 자유무역협정을 인한 수입제품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적 안전규제대상 제품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안전정보수집과 관리, 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간접적인 정부규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정부규제로는 생산자 모두가 시장에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 판매하는데 있어 충분한 경쟁이 존재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시장지향적인 정책이다. 특히 이때, 안전에 대한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안전정보공개에 대한 경쟁촉진정책이 중요하다. 사업자 스스로가 경쟁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정보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쟁구조를 회복하는 동시에, 제품표시에 대한 규제, 등급사정, 제품표준화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시장지향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경쟁촉진정책이며, 이 같은 이유에서 정부는 정보공개정책을 확대하고 시장개방을 허용함으로 하여 국내시장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폐혜를 줄여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3) 소비자 지원정책

소비자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부족함은 소비자보호정책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즉 모든 소비자가 구매활동에 있어 기업과 대등한 정보력을 가지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기능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때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수많은 정보가 서로 모순될 경우 어떤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소비자정보시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서 자유경제시장의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불안전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문제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안전에 관련된 피해는 광범위하고, 특히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안전정보 제공 그리고 소비자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담 피해구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중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소비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Ⅲ. 한일 소비자안전정책 및 제도 현황

1. 한일 소비자안전 관련 법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정책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지만 소비자안전에 관련한 규정은 개별법에 의해 산재되어 있는 현실이다. 즉,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관련 안전법이 있고,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약사법」, 「대기환경보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품목별 소비자안전에 대한 규정이 분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업무, 공산품의 경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중심의 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업무, 시도지사의 경우 리콜제도 운영 등 여러 기관에 분담되어 있어 소비자안전정책의 획일성과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소비자안전관련 각 부처들은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주요 역할 및 업무정보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되고 있지 못하며, 소비자안전사고가 있을 때에도 각 부처가 책임소관을 명확히 못하고 서로에게 전가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일본의 경우 21세기에 들어 국내산 소의 BSE(광우병) 문제가 발생하면서 식품안전문제를 중심으로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안전대책에 보다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60년대 약사법 제정이후 소비자안전에 관련된 법률들은 21세기 들어 대부분 개정되었으며, 2004년 소비자기본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함께 소비자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기본시책에는 소비자안전이 최우선시 되었다. 소비자안전정책은 크게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안전, 자동차, 화학제품, 서비스, 판매업자에 의한 안전정보제공을 큰 분류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1973년 재정의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개정이 단행되었는데 열탕기 및 가정용 파지기에 의한 제품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생활용제품에 의해 사망사고, 중증사고, 후유장해사고, 일산화탄소중독사고 및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제품의 제조 수입사업자는 국가에 사고발생을 알고 난 후 10일 이내 보고해야만 한다. 또한 판매 수리 설치공사사업자는 중대제품사고를 안 시점에서 즉시 제조 수입 사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사고정보가 보고되면 가스기기 석유기기의 경우 메이커명, 제품형식명을 포함하여 신속히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하며 언론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기기 석유기기 이외의 일반제품의 경우 제품관련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사고개요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고정보(사업자명, 기종형식명, 사고내용, 사업자의 재발방지책, 기타 사고재방방지를 위한 유의사고)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보도 발표해야 한다(내각부, 2007). 일본에는 제품안전 4법이라 하여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비롯하여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률, 가스사업법, 전기용품안전법이 제품안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정보제공의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안전정책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한 소비자안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추진하여 식품안전에 있어서의 리스크 평가 와 관리, 분석을 투명하고 철저히 하며, 이에 대한 소비자, 생산자, 사업자, 행정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해 나간다. 특히 광우병 관련하여 소고기를 시작으로 모든 식품에 대하여 트레서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03년 6월 공포된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고기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국내산 모든 소에게 10자리수 개별번호를 주어 출생부터 식육처리까지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트레서빌리티 시스템을 모든 식품일반에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도 이후 과일, 계란, 조개류, 양식어, 해조류 등에 있어서의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품목을 추가시켜나갈 예정이다.

2. 한일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현황

소비자안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안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제도는 크게 소비자안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위한 소비자위해정보 제도, 소비자안전사고에 대한 미연방지와 사후구제를 위한 리콜제도 및 제조물 책임법, 안전기준과 규격에 대한 인증제도, 이외에 기업 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함정보나 위해정보를 공익정보로 적극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고발자제도 등이 있다.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입법화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은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제도로서 제도화되었다. 내부종업원의 양심고백에 의해 밝혀진 미쓰비시자동차 리콜은폐사건이나, 유키지루시 식품 위조표시사건 등 일련의 큰 사건사고는 일본 내 공익통보자보호제도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요 소비자안전정책 제도 중 소비자위해정보에 관한 수집과 분석 시스템은 소비자안전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위해정보보고 시스템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병원・소방서 등 전국의 위해정보보고 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정보를 수집, 분석토록 위탁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자체적으로 소비자불만・피해구제 사례, 핫라인, 인터넷, 해외정보, 기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집된 위해정보에 대하여 사실 확인 조사, 위해정보평가실무위원회, 심층조사,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비자 홍보 및 계도, 대정부건의(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 사업자 시정촉구 (품질개선, 결함제품 회수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결함정보보고의무 제도라 하여 사업자가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일본은 1975년도 이후 전국 각지의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생활상담정보 중에서 상품 서비스에 관한 인명사고를 「위해」, 또한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위험」으로 수집하고, 1978년 10월부터 전국각지의 협력병원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국민생활센터에서 자체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동종 사고를 미연방지, 확대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원인과 주요점을 정리해 보도발표하며, 보도기관 및 전국의 소비생활센터의 주간 리플렛, 국민생활센터의 출판물에 게재하여 일반소비자에 대한 주의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위해정보 시스템은 소비자안전문제 파악에 기본적인 정보수집 체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파악함은 물론, 이를 충분히 정보공개하고 활용하여 소비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사업자규제 및 소비자지원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소비자안전정책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Ⅳ. 한일 소비자위해정보 분석

1. 한국의 소비자위해정보 현황분석

2006년 한해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정보는 총 17,639건으로 2005년도 대비 42.12% 증가하였다. 전체의 53.6%가 위해정보보고기관을 통해 접수되었고, 소비자의 정보제공 및 피해상담을 통해 접수된 경우는 전체의 42.6%이다. 대분류 체계로는 식료품/기호품이 총 2,947건(19.86%)로 품목별 위해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세분류 체계로는 승용자동차가 총 1,057건(7.12%)으로 가장 위해빈도가 높은 품목이었다. 특징적으로는 토지건물 및 설비의 세부품목인 문 유리 등의 건축자재가 958건(6.46%)으로 시설물의 문이나 유리 등과 관련한 위해가 다발하였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3,999건(26.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0대 2,354건(15.87%), 20대 2,093건(14.11%), 40대 1,488건(10.03%), 10대 1,157건(7.80%), 60대 이상 1.024건(6.90%), 50대 867건(5.84%) 순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30대에 비해 약 1.7배, 20대에 비해 위해건수가 2배 가까이 접수되어 위해에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추락/넘어짐/미끄러짐, 충돌/충격이 주요 위해원인이며, 이로 인한 가정 내 위해사고가 다발하였다. 치료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당일이나 1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안전사고가 전체의 58.32%를 차지하였다.

2. 일본의 소비자위해정보 현황분석

일본은 1975년 이후 국민생활센터 및 소비생활센터에서 수집된 상담정보를 중심으로 위해정보와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협력병원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06년 소비생활센터로부터 수집된 위해정보는 7,054건이며, 전년도(6,511건)에 비하여 543건 증가하였다. 상품분류별 건수에 대해서는 에스테틱서비스, 의료서비스, 미용실 등의 보건 복지서비스가 가장 많은 1,891건(26.8%)이었다. 다음으로 건강식품, 조리식품, 음료수 등의 식료품이 1,239건(17.6%)이며, 화장품류, 가정용전기치료기구, 자기매트리스・자기용품 등의 보건위생품이 1,168건(16.6%)이다. 이하 이불류, 의자류, 침대류 등의 주거품이 799건(11.3%), 외식, 식사 및 식재배달, 결혼식관련서비스 등의 기타서비스가 315건(4.5%)였다.

상품 서비스별 건수로는 에스테틱서비스가 646건(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식품 547건(7.8%), 의료서비스 543건(7.7%)의 순이었다. 4위는 화장품류로 484건(6.9%), 5위는 외식으로 261건, 전체의 3.7%를 차지하였다.

위해의 내용으로는 기타 상처와 제증상이 1,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 건강식품, 치과치료 등에 의해 몸 상태와 기분이 안 좋고, 자극이 있는 등의 증상이 일어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피부장애가 1,779건(25.2%)이며 화장품류, 에스테틱서비스, 건강식품 등에 의한 것이 많았다. 3위는 소화기장해로 684건(9.7%)이며 건강식품, 외식, 조리식품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위험정보는 3,597건으로 작년에 비해 778건 증가하였다. 상품등분류별 건수를 보면,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탈것이 가장 많은 1,196건(33.2%) 였다. 이하 스토브, 석유팬히터, 전자렌지 등의 주거품이 1,123건(31.2%), 텔레비전, 컴퓨터, 라이터 등의 담배용품 등의 교양오락품이 303건(8.4%), 순간열탕기, 온수보일러, 기타 욕실설비 등의 토지 건물 설비가 231건(6.4%)이었다. 상품 서비스별 건수는 자동차가 946건(26.3%)으로 가장 많고 2위는 스토브(205건, 5.7%), 3위는 오토바이 등 전동이륜차(104건, 2.9%), 4위는 수리서비스 88건(2.4%)로 자동차 수리 등이 포함된다.

2006년도 위해정보수집 협력 20개 병원으로부터 수집된 위해정보는 총 8,581건이며, 전년도에 비해 627건 감소하였다. 사고원인의 상위 3위는 칼, 의자류, 책상 및 테이블류 등의 주거품이 2,507건(29.2%)이며, 계단, 문, 바닥 등의 토지 건물 설비가 2,437건(28.4%), 놀이기구, 담배, 문구 사무용품 등의 교양・오락품이 1,483건(17.3%) 였다. 상품 서비스별로는 계단(759건, 8.8%), 자전거 517건(6.0%), 칼 305건(3.6%) 순이었다. 한편 위해 당사자의 성별 및 연령에 대해서는 10대미만이 전체의 42.3%(3,632건)를 차지하였고 특히 0-2세의 영유아가 1,968건(22.9%)으로 가장 많았다. 10대의 779건(9.1%)과 합치면 20대 미만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20대는 723건(8.4%)였다. 성별은 남성이 4,518건(52.7%), 여성이 4,063건(47.3%)이다. 위해의 정도는 경상이 7,767건(90.5%)으로 가장 많고 중상이 762건(8.9%), 중증이 46건(0.5%), 중증이상이 1건, 사망은 5건이었다.

Ⅴ. 결 론

소비자정책에 있어 기본이 되는 소비자안전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바이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일간의 소비자안전정책 및 위해정보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자안전정책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차이점, 우리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안전정책은 양 체제 모두 품목별 개별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 제도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법을 새로이 개정하고 내각부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식품안전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각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제품안전에 대해서는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개정법에 의한 중대제품사고에 대한 보고와 공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 하여 정보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위해정보 수집에 있어 위해정보와 위험정보, 병원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수집 하고 있으며, 위해정보시스템이외에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수집과 의약품안전성 정보보고제도, 가정용품에 관한 건강피해병원모니터 제도 등을 운영하여 보다 다차원적인 소비자안전 정보수집과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다.

우리정부는 앞으로 FTA의 확산과 더불어 소비의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정책의 선진화를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안전정책 추진체제를 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고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소비자안전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제품안전 등의 주요 분야에 있어 보다 강력한 관련기구 및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 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안전관련 정보수집과 관리, 정보제공을 활발히 하고, 정보제공에 있어 사업자 스스로 위해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안전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정보수집 가능하고, 올바른 소비자안전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지원하는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소비자안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안전정보수집 제도의 적극 활용과 더불어 이를 소비자교육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하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성숙, 이승신 (2000). 상품 안전정보에 관한 소비자행동 연구, 소비자학연구, 11(3), 59-85.

김성숙, 이기춘 (1995).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3), 1-14.

김성천 (2005). 서비스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김성천 (2005). 소비자안전과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김현주 (2006). 소비자위해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이기헌 (2006).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최병선 (1989).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행정논총, 28(1), 179-210.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소비자위해정보백서.

鈴木深雪 (2002). 消費生活論消費者政策、尙學社

日本消費者教育學會 (2005). 消費生活思想の展開、稅務経理協會

內閣府國民生活局 (2007). ハンドブック消費者2007

國民生活センター (2007). 消費生活年報2005

國民生活センター (2007). 2006年度の危害情報システムにみる危害・危險情報